2-2-2.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(이하"대학원"이라 한다)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학위의 수여) ① 석사학위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석사 학위 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 수여한다.<개정 2021.9.1.>

② 석사학위의 수여는 학칙이 정한 신학석사 학위증을 수여함으로써 행한다.

제3조 (논문작성계획서 제출) ① 학생은 대학원 입학 첫 학기 개강 후 3개월 이내에 논문 작성 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3.1., 2021.9.1.>

② 당해 학기에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의 2 (졸업논문제출) <본조신설 2008.3.1., 개정 2021.9.1.>① 대학원 졸업논문의 심사는 대학원 3학년이 되는 해 10월중 완료하여야 하며, 그 결과는 사제품 심의의 자료로 제출된다. <개정 2014.6.1., 2021.9.1.>

② 졸업논문 제출자들은 2학년이 되는 해 9월말까지 80% 이상(본문 완료에 준하는 수준)의 지도 과정을 기록한 논문지도기록표(이하 '기록표'라 한다) 및 논문지도교수 평가서(이하'평가서'라 한다)를 제출한다. 평가서의 제출은 연기할 수 없으며, 이는 부제품 심의자료로 제출된다.<개정 2014.6.1., 2015.9.25., 2021.9.1.>

③ (삭 제)<개정 2014.6.1>.

④ 졸업논문을 제출시 첨부되는 기록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.

가. 논문작성계획서 작성시부터 기록한다.

나. 최소한 1개월에 1회, 또는 논문내용상 한 장이 마무리 될 때마다 기록되어야 한다.<개정 2021.9.1.>

⑤ <본조신설 2014.6.1>평가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한다.

가. 논문 지도 횟수.

나. 9월 말까지의 논문 진행 정도(%).

다. 논문 작성자의 성실성에 대한 간략한 평가.

라. 석사논문 혹은 수료논문에 대한 지도교수의 예비 판정.

제4조 (논문지도교수)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본 대학의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4.6.1., 2021.9.1.>

②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에게 변경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이미 제출한 학위논문 작성 계획서의 지도과정 중 논문제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제목 변경원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 (종합시험)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4학점 이상의 교과학점을 취득한 자만이 응시 할 수 있다<개정 2008.3.1, 2010.3.1., 2014.6.1.>.

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대

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3.1.>

③ (삭제)<개정 2010.3.1.>

④ 종합시험의 출제 방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.<개정 2008.3.1, 2014.6.1>

⑤ (삭제)<개정 2008.3.1, 2014.6.1>

제6조 (시험실시) ① 종합시험은 매년 3월에 실시한다.<개정 2008.3.1., 2014.6.1>

②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08.3.1, 2010.3.1>

③ (삭제)<개정 2008.3.1, 2010.3.1, 2014.6.1>

제7조 (합격기준)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합격기준에 미달된 영역에 대해서는 당해 학기 안에 재시험을 치르도록 한다.<개정 2008.3.1, 2010.3.1, 2014.6.1>

제8조 (논문제출 기간 및 시기) ① 청구논문 제출시기는 4월과 9월말까지로 한다.<개정 2008.3.1., 2011.3.16., 2021.9.1.>

② 제3조의 1의 ①항과 ②항 및 ④항에 해당하지 않은 자의 청구논문은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1학기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15.9.1.>

③ 지도교수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은 청구논문은 논문지도기록표와 논문 3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3.1.>

④ 청구논문 제출자는 당해년도에 책정된 논문심사비중 50%를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3.1.>

⑤ 제3조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①항의 9월말까지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.<본항신설 2015.9.1.>

제9조 (학위 청구논문 심사)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본교 교원으로 구성된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가 행한다.<개정 2008.3.1., 2025.6.1.>

②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(주심) 1인을 두며,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.<개정 2025.6.1.>

③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를 당해 학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학위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이한다.<개정 2008.3.1.>

가.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표와 평가서를 작성한다.

나. 심사위원이 지도교수인 경우에는 논문주제의 타당성, 연구논문 내용의 수준에 대하여 검토한다.

다. 제2심사위원인 경우에는 논문의 체제 및 서술능력과 학문적 기여도 등 기본적 평가기준 도달여부를 검토한다.

라.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원에서 개최하는 공개 논문 발표회를 통하여 발표할 수 있다.

④ 논문심사 개시 후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. 다만, 심사위원의 질병, 해외파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위원장은 그 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,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,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

제10조 (논문심사 합격기준)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에 있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심

사위원 2명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.

② 학위논문 심사에서 불합격한 논문 제출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논문을 수정. 보완하여 제출할 경우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11조 (학위 논문 제출) ①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외국어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심사 결과 학위 논문으로 인정된 논문은 1개월 이내에 12부(하드커버 3부 포함)와 논문 내용이 수록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3.1., 2021.9.1.>

③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은 체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9.1.>

1. 판종 : 4.6배판(19㎝× 26㎝)
2. (삭제)
3. 표지 : 흑색커버
4. (삭제)
5. 논문편성 순서

가. 표지(검정색) 나. 속표지(표지규격과 동일)
다. 제출서 라. 인준서
마. 목차 바. 도표목차(필요한 경우)
사. 국문 초록 및 주제어 아. 본문
자. 참고문헌 차. 부록, 인용 및 기타(필요한 경우)
카. 영문 초록 및 주제어

④ 상세한 논문의 내용 및 기타 형식은 학위논문 작성 제출규정에 의한다.

제11조의 2 (수료자에 대한 규정)<본조신설 2008.3.1.> (삭제)<2021.9.1.>.

① (삭제)<2021.9.1.>

② (삭제)<2021.9.1.>

③ (삭제)<2021.9.1.>

제11조의 2 (포상)<본조신설 2008.3.1.>석사학위논문의 질적 향상을 기할 목적으로 1논문당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1.9.1.>

가. (삭제)<개정 2014.6.1.>
나. (삭제)<개정 2014.6.1.>
다. (삭제)<개정 2014.6.1.>

② <본조신설 2014.6.1.> 대상 논문 선정은 논문심사위원 3인의 합의를 거쳐 심사위원장이 추천하고,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③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④ 이 규정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⑤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⑥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⑦ 이 규정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⑧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⑨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